

#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혜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8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김혜영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64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이행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 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규제에 호응하는 우수기술기업의 육성
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
8.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10.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11.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2.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3.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4.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 나.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 등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① 시와 공공기관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와 공공기관은 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정도를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기관 인증 부여, 표창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